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49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곽규택・이헌승・백종헌

주진우 · 김대식 · 조승환

서지영 · 김희정 · 박수영

이성권 · 정성국 · 박성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둔 것 과는 차이가 있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적정한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 7제1항).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해당 사법경찰관의"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
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청) ①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	
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	<u>통</u> 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